

I

사업 개요

□ 목 적

-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원료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비료 수급 및 공급가격 안정, 수출활성화 유도
 - 무기질비료는 원료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함에 따라 원활한 원료 조달과 적기 안정적인 원료사용 여건 마련 및 정책자금지원으로 비료공장 가동률을 높여 수출활성화 유도

□ 사업내용

-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, 농업인, 비료판매업자에 3년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

□ 예산 및 지원 기준

- '24년 사업규모/지원기준 : 4천억원/연리 3.0%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
 - 지원한도: 최근 3년간 원료별 원료구입 물량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비료원료 구입계획금액의 100% 이내

□ 사업 신청

- 시행지침 별지 제1호,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한국비료협회에 신청

□ 대상자 선정

- 한국비료협회의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배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별 지원금액 배정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| 담당기관 | 담당과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림축산식품부 | 첨단기자재종자과 | 사무관 이흥숙 주무관 유진빈 | 044-201-1892 044-201-1893 |
| 한국비료협회 | 기획조사부 | 이 사 조규용 대 리 문현민 | 02-552-2812 02-552-2811 |
| NH농협은행 | 농업금융부 | 팀 장 김여진 과 장 정재섭 | 02-2080-7575 02-2080-7582 |

Ⅱ 주요 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무기질비료 생산업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, 농업인, 비료 판매업자에 3년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

*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비료생산업체로서 직접 비료를 생산하여 국내공급

-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국내공급하는 업체의 원료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, 수출하는 업체의 구매자금을 지원

3. 지원대상

-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업체
 - 무기질비료의 주 원료(요소, 염화칼륨, 인광석, 암모니아, 인산이암모늄 등)를 구매하여 비료를 제조하고 농업인에게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업체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무기질비료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구입자금(농업용 비료제조 용도 외 사용 불가)

5. 지원대상 무기질비료

○ 지원대상 무기질비료(별표 1)

- 비료(단비) 또는 복합비료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되는 “요소, 염화칼륨, 용성고토인비(FMP), 황산칼륨, 황산마그네슘(고토)칼륨, 황산암모늄”
- 복합비료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되는 “인산이암모늄(DAP)”
- 복합비료와 황산암모늄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(구매)하는 “인산, 암모니아”
- 인산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하는 “인광석”
- 황산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하는 “유황”과 복합비료 생산원료인 “황산”

6. 사업규모,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, 용자 시기

○ '24년 사업규모 : 4,000억원(용자)

* 지원액은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지원 자금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지원 금리 : 연리 3.0%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

-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(고정, 변동) 선택 가능

* 고정 :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

* 변동 :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
(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)

○ 용자기간 : 1년 이내 상환(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·대환 가능)

○ 용자시기 : 연중

○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, 분기납, 반기납, 연납 중 택일 가능

○ 지원한도 : 최근 3년간 원료별 원료구입 물량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비료원료 구입계획금액의 100% 이내

○ 지원범위 : 무기질비료*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

* 원료구입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비료제품 범위(별표2)

Ⅲ

사업 신청 및 선정

1. 사업 신청

농림축산식품부

-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용자지원 사업시행지침 수립·시달

한국비료협회

- 무기질비료(농협 등 납품 또는 수출용 비료)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침, 신청방법 및 기한 등을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사업 적극 홍보

사업대상자

-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1호 배정신청서, 별지2호 사업계획서 등을 한국비료협회에 제출

* 기타 제출양식은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시 별첨

2. 사업자 선정

한국비료협회

-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비료협회에서 정하되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
- 한국비료협회는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사업심사위원회는 선정 및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심의함. 한국비료협회는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확정받은 후 대상업체에 통보

- 농협은행 대출사무소 등을 파악하여 업체별 지원명세를 농협은행장에게 통보

* 지원대상업체는 대출 희망시기 별도 협의

-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국내공급하는 업체로서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'23년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, '24년 수입선 다변화 계획, 수출실적 등을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음

1.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

< 세부계획 수립 >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한국비료협회에서 통보받은 금액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하고 한국비료협회에 제출

한국비료협회

- 한국비료협회는 각 사업대상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세부사업계획을 농식품부로 보고

농협은행

- 지원대상 업체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지원

< 사업 시행 >

사업대상자

- 한국비료협회에서 통보받은 금액에 따라 용자 실행

농협은행

- 관련규정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되 한국비료협회가 통보한 업체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

< 사업 관리 >

한국비료협회

[무기질비료 원료구입 관리]

- 별표 1 외의 원료를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포함 여부를 농협중앙회와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
- 지원필요성, 지원실적, 사후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

[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용자한도액 관리]

- 용자한도액 설정을 위한 가격관련 자료를 농식품부에 제출

[무기질비료 생산업체 관리]

- **지원자금을 목적 외 부당사용**, 제품교환 미흡, 시장질서 교란 등의 물의를 일으킨 생산업체는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비료생산업체 관리
- 무기질비료가 건전하게 생산·유통·판매될 수 있도록 비료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실시

2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< 정산 >

사업대상자

- 자금지원 사용 실적(대출실적, 원료별 나라별 구입실적 등)을 한국비료협회에 제출

< 사후관리 >

농림축산식품부

- 원료구입자금 지원현황(대상 원료, 비료제품 범위 및 배정기준 등)에 대해 사후관리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,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·감독

한국비료협회

- 연 2회 이상 **집행실적, 원료별 나라별 원료구입 실적**, 현지 실태조사 등 자금 이용 현황 점검하여 **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**
 - 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익년도 자금배정에 반영
- 원료구입자금 지원으로 생산된 비료가 수출 또는 농업인에게 유통·판매 되도록 관리
- 부당사용사례(허위자료 제출, 불공정 거래행위, 용자신청서류와 다른 원료 공급, 부적합한 원료 거래내용 허위 작성,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)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자 및 부당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협은행에 통보

농협은행

-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한국비료협회장으로부터 부당 대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

< 제재 >

농림축산식품부

- 한국비료협회로 등으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사업참여제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관리 및 운영

농협은행

- 한국비료협회 등으로부터 부당사용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서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9조(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)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

한국비료협회

- 지원업체가 **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용하거나** 제품교환 미흡, 시장질서 교란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하고, 농협은행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재 요청

V

평가 및 환류

1.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

농협은행

-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용자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(단, 농식품부에서 용자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요구 시에는 보고 시기에 관계없이 관련 자료 제출)

2. 평가

- 한국비료협회는 **익년도 2월 말까지** 용자지원 실적, 국내 비료가격 인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
 -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의 협조를 받아 매년 말 업체별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 추정을 위한 원가분석과 정책자금 지원 유무의 경우별 효과 비교 분석
- * 농협경제지주 자재부는 원가분석 자료 등 적극 지원

3. 환류

-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용자지원 실적 및 비료가격 인하 효과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및 제도개선 추진

【별표 1】

『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』 지원 대상 원료명

| 원료명 |
|---|
| 1. 요소(3102101000) - 프릴요소, 그래놀요소 및 코팅 요소 |
| 2. 염화칼륨(3104200000) |
| 3. 인산이암모늄(DAP)(3105300000) |
| 4. 암모니아(2814100000) |
| 5. 인산(28092010) 및 인광석(2510101000) |
| 6. 유황(250300) 및 황산(2807001090) |
| 7. 기타 - 용성고토인비(FMP(Fused Magnesium Phosphate))(3103909000) - 황산칼륨(310430) 및 황산마그네슘(고토)칼륨(31049010) - 황산암모늄(310221) |

【별표 2】

『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』을 사용해 생산한 비료제품 범위

| 원료명 | 비료제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요소 | - 요소 단비 - 일반 복합비료(21-17-17, 18-0-16 등) - 맞춤형 비료(1~30호) - 완효성 비료 및 기능성 비료 - 원예용 복합비료 등 |
| 염화칼륨 | - 염화칼륨 단비 - 일반 복합비료(21-17-17, 18-0-16 등) - 맞춤형 비료(1~30호) - 완효성 비료 및 기능성 비료 - 수출용 복합비료 - 원예용 복합비료 등 |
| 인산이암모늄(DAP) | - 맞춤형 비료(1~30호) - 일반 복합비료 및 원예용 복합비료, 완효성 및 기능성 비료 - 수출용 복합비료 등 |
| 암모니아 | - 내수(일반복비 등) 및 수출용 복합비료 - 황산암모늄 |
| 인산 | - 내수(일반 복비 등) 및 수출용 복합비료 |
| 인광석 | - 인산제조 원료로 사용 |
| 유황 및 황산 | - 유황 황산제조 원료로 사용 - 내수(일반 복비 등) 및 수출용 복합비료 |
| 기타 -용성고토인비(FMP) | - 용성인비 및 용과린 등 인산질비료와 복합비료 |
| -황산칼륨 및 황산마그네슘칼륨 | - 황산칼륨 단비, 황산마그네슘(고토)칼륨 단비 - 일반 복합비료 및 맞춤형비료, 원예용 복합비료 등 |
| -황산암모늄 | - 일반 복합비료, 맞춤형비료, 원예용비료 등 |

【별지2호 서식】

사업계획서

I. 기업현황

1. 연혁

| 년 월 일 | 주 요 내 용 |
|-------|---------|
| | |
| | |
| | |
| | |

2. 기업의 입지

| 구 분 | 본 사 | 공 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부지 | 평 | 평 |
| 2. 건물 | 구 조 연건평 평 | 구 조 연건평 평 |
| 3. 소유여부 -소유구분 (해당란에 ○표) | 임차 () 자가 () | 임차 () 자가 () |
| -자가인 경우 기업자산으로 등재 여부 (해당란에 ○표) | 등재 () 미등재() | 등재 () 미등재() |

II. 사업계획

1. 제품생산 계획

| 제 품 명 | 용 도 | 주요 원료 |
|-------|-----|-------|
| | | |

※ 기재요령

- 1) 제품명 : 원료 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
- 2) 용도 : 예) 수도작용, 발작물용 등
- 3) 주요 원료
 - 제품 생산의 주 원료 등

2.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

|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

※ 기재요령

- 1)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 및 기대효과
 - 연간 생산 계획량
 - 판매예정단가 : 원 (현재 시중가: 원),(부가가치세 별도)
 - 자금지원 기대효과
: 수입대체 효과, 품질개선 효과 등을 기재

3. 원료 구입자금 소요 현황

| 원료명 | 국가 | 수량 | 단가 | 소요금액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--|----|
| 1. 요소 | | 톤 | \$/톤 | 백만원 | |
| 2. 염화칼륨 | | | | | |
| 3. 인산이암모늄(DAP) | | | | | |
| 4. 기타 | | | | | |
| 계 | | | | | |

※ 기재요령

- 1) 구입할 원료의 수입 단가 및 소요금액은 선하증권(BL)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

4. 원료 구입자금 신청 금액

(단위 : 백만원)

| 원료명 | 소요금액 | 재원조달계획 | | | 비고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|
| | | 금회지원 (신청) | 자부담 | 용자등기타 | |
| | | | | | |
| 계 | | | | | |

Ⅲ. 제출서류

1. 제출서류

| 구분 | 접수시 제출서류명 | 요구시 제출서류명 |
|----------------|---|--|
| 1. 기본서류 | 1. 신청서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3.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(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) | 1. 4대보험 가입서류(택1) 2. 공장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 (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) 3. 농협신용조사서 |
| 2. 해당시 제출서류 | | 1. 원료 수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사본 (인보이스, BL 등의 사본) |